

한·EU FTA의 분야별 현안

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¹⁾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hckim@kiep.go.kr.

본 논문은 김홍종 외 (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의 4장의 일부임.

I. 기본적 고려사항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EU의 통상정책은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으로 대표된다. 공동통상정책은 EC조약²⁾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EC조약은 무역과 무역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인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EC는 EU가 대외적으로 국제적 조약을 하는 당사자로 대표되며³⁾, 모든 상품과 대부분의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동통상정책을 실행하는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EC조약 3조는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한 방안으로서 공동통상정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⁴⁾ 131 ~ 134조는 공동통상정책의 집행 기구와 절차, 그리고 정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U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근거는 EU가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EC조약은 EU의 관세동맹과 공동통상정책과의 관계를 규정하였는데, EU 관세동맹이 지향하는 것은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공동통상정책은 이 관세동맹의 효과가 회원국 경제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관세동맹을 포함하는 공동시장이 공동통상정책을 집행하는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2) 1957년 로마조약에서부터 유럽통합을 규정하는 기본조약을 일반적으로 EC조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언급하는 EC조약은 2002년 12월에 OJ에 나온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를 말하는 것으로 니스조약의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니스체제를 따르는 니스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3) EU는 현재 국가별 비준이 진행되고 있는 EU헌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WTO에서 EC(European Communities)로 대표되고 있다. EU헌법안은 EU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EC는 현재로서는 EU의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법인격으로 대표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통상정책의 주체는 EC이지만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EU로 통칭하기로 한다.

4) For the purposes set out in Article 2, the activities of the Community shall include, as provided in this Treaty and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set out therein:(b) a common commercial policy;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3:1)

5) By establishing a customs union between themselves Member States aim to contribute, in the common interest,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world trade, the progressiv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lowering of customs barriers.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avourable effect which the abolition of customs duties between Member States may have on the increase in the competitive strength of undertakings in those States.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rticle 131)

사실, EU의 공동시장은 상품·서비스·자본·노동의 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가별로 대외관세가 다르고 통상정책이 상이하면 역내 네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이 되지 않거나 혹은 서로 다른 대외통상정책은 무력화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대외관세를 체계가 유지된다면 역외국은 가장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출한 다음에 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최종소비국으로 상품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동맹을 포함하는 공동시장은 공동대외관세와 공동무역정책을 통해서 유지·발전된다.

공동통상정책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외 협상의 차원에서 단일한 통상정책을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존재함으로써 EU의 대외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는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공동통상정책이 회원국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EU의 주요한 대외정책 중의 하나인 공동통상정책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EC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통상정책의 범위의 확대는 개별 회원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경제 및 무역정책 독자성의 축소로 이어지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EU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GATT의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후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무역관련지식재산권(TRIPS) 등이 다자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EU의 공동통상정책도 서비스, 지재산 등의 국경간 이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동통상정책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지면서 유럽연합이사회의 이사회 결정(decision)⁶⁾ 등을 통하여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어 왔으며 니스조약⁷⁾은

6) EU의 통상정책은 공동체 법령(Community acts)에 의해 실행된다. 공동체 법령에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그리고 권고(recommendation)와 견해(opinion)가 있다. 이 중에서 규정은 가장 강력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법령이며, 지침은 회원국의 법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며, 결정은 해당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으며, 권고와 견해는 구속력이 없다.

7) 2000년에 유럽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되고 국가별 비준을 거친 이후 2003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니스조약은 EU의 중동구 확대를 대비하여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의회 등의 의사결정구조 변경과 각종 제도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으로서 원래의 일정으로는 2009년까지 니스체제가 유지되고 EU헌법안이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예정되어 있었다.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모든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측면에 관한 조약을 협상하고 완성하는 부분까지 확대하였다.

공동통상정책과 관련한 많은 결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행해진다. 유럽의회의 결정은 보통 과반수로 결정되며, 무역 및 무역관련 이슈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이사회 결정은 가중다수결투표제(Qualified Majority Vote: QMV)로 이루어진다. 가중다수결투표제로 내려지는 결정은 관세율의 변경, 상품·서비스·TRIPS에 관한 관세 및 무역협정, 자유화 조치의 통일, 수출정책,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 등이다. 반면, 조세(taxation)와 같은 예민한 분야는 아직도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무역협정에 관한 대외협상은 EU집행위가 담당하는데 그 전에 이사회가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협상은 이사회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사회가 임명하고 EC조약 133조 3항⁸⁾과 합치하는 특별위원회⁹⁾의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협정의 경우, 예를 들면 WTO의 주요사안이나 기본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s), 또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같이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협정을 맺을 때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니스조약에서 위임된 공동체의 영역을 넘어서거나 공동체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는 협정의 경우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협정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협상 중에도 외부전문가가 평가하는 절차가 있다.

EU의 공동통상정책 중의 하나인 공동무역정책(Common Trade Policy)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거의 모든 무역관련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치를 다루고 있다. 공동무역정책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역관련 분야에는 회사법, 간접세, 표준과 기타 기술규정, 공동체 특허,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포함된다.

8) Where agreements with one or more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ed to be negotiated, the Commiss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which shall authorize the Commission to open the necessary negotiations.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greements negotiated are compatible with internal Community policies and rules. The Commission shall conduct these negotiations in consultation with a special committee appointed by the Council to assist the Commission in this task and within the framework of such directives as the Council may issue to it. The Commission shall report regularly to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ogress of negotiations...(133조 3항)

9) 특별위원회는 흔히 133조 위원회(133 committee)로 불린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역내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유럽단일시장의 지향점이지만,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역외국과의 자본이동이 EMU의 작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는 최장 6개월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국내법규의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건전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계나 행정적 목적으로 또는 공공정책과 보안을 이유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절차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자본이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자본시장 일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EU와 FTA를 맺을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FTA로 인해 국내산업에 급작스러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세이프가드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다만 세이프가드의 기한을 최장 6개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검토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검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세이프가드 기간을 조정할 것인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EFTA FTA의 경우 최장 6개월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EU가 단일시장이라고 하지만 역내 시장에서 완전 이동의 원칙이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¹⁰⁾ 예를 들어 간접세, 상호인정, 표준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국가기준의 조화, 항공운송통제, 철도분야, 이중과세 방지, 정부조달, 공동체특허, 지식재산권 행사,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수단이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특히 자본시장의 구조, 기업지배구조 규칙, 기업과세체계에 대한 회원국간 차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단일시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을 수 있다.¹¹⁾ 따라서 이러한 역내 시장에서의 불일치는 EU의 공동통상정책에서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EU와 무역협정을 진행하는 역외국으로서는 협상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¹²⁾ 특히

10) 예를 들어 EU집행위는 상호인정원칙이 완벽히 적용되지 않아 1,500억 유로어치의 역내무역이 감소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11) 집행위는 기업과세체계의 부조화로 인한 비용이 총 기업소득세의 2~4%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12) 예컨대 주류, 석유, 가스, 담배 등에 과세되는 물품세의 경우도 회원국마다 과세범위와 세율이 제각각이다. 이에 관한 일련의 지침은 국가간 차이를 축소하고 투명한 과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현재

신규회원국에서의 EU규범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EU는 원칙적으로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적, 역사적, 지정학적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매우 활발한 무역특혜협정을 맺어 왔다. 그 결과 WTO 회원국 중 순수하게 최혜국대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의 9개국에 불과하며 이 국가들과의 교역규모는 전체 EU 교역의 36%를 차지하고 있다.¹³⁾ 1999년 이후 EU는 새로운 무역특혜협정을 시도하지 않고 현재의 협정이나 진행 중인 협상만을 해 왔는데 이는 다자간 협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¹⁴⁾ EU는 거대경제권과는 특혜무역협정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는 거대경제권과의 무역자유화는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혜국대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9개국 중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3대 거대경제권과의 관계는 결국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될 사안이 될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이 3개국을 제외하고는 EU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¹⁵⁾

EU가 그동안 체결한 무역특혜협정은 대개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 농산물 교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자유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 교역의 부분적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화의 정도는 보통 대상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EU가 더 빨리, 많은 폭의 자유화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체결되는데 이는 주로 후진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다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EU는 농산물 교역에서는 보호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협정에는 또한 기술표준의 조화,

진행 중에 있다.

13) 그러나 무역특혜 대상국과도 최혜국대우 교역을 행하고 있는 바, EU 전체 교역의 38%가 이에 해당된다고 파악된다. 그 대상국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이다. 따라서 최혜국대우 교역은 EU 전체 교역의 74%로 추산된다.

14) Lamy(2002)

15) 교역량 규모로 볼 때 한국은 EU의 8대 교역대상국이다. 캐나다가 9위에 해당한다.

지재권 보호,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구제기구, 분쟁조정체계 등 비상품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에 와서는 환경이슈도 포함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개별국이 아닌 경제권, 예를 들어 MERCOSUR, ACP, 지중해권 북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EU는 주로 개도국과의 FTA가 많은 데 이것은 저개발 개도국과의 무역특혜협정이 WTO 차원의 다자간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특혜무역협정은 대상국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정이다. 이는 EFTA 국가들과 서부발칸국가들을 포함한 회원가입 대상국들인데, 이 국가들과는 가장 밀접한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규범(acquis communautaire)의 완전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EU의 지역협정 형태

협력 형태	상대국	협정	발효 일시
SM	아이슬란드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1994년
SM	노르웨이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1994년
SM	리히텐슈타인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1994년
CU	안도라	Exchange of Letters	1991년
CU	터키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1995년
FTA	불가리아	Europe Agreement	1993년
FTA	루마니아	Europe Agreement	1993년
FTA	덴마크(Faroe 군도)	Free Trade Agreement	1997년
FTA	스위스	Free Trade Agreement	1973년
FTA	마케도니아	Free Trade Agreement(Interim Agreement)	2001년
FTA	크로아티아	Free Trade Agreement(Interim Agreement)	2002년
FTA	팔레스타인	Association Agreement(Interim base)	1997년
FTA	튀니지	Association Agreement	1998년
FTA	모로코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6년→2000년
FTA	이스라엘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5년→2000년
FTA	요르단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7년→2002년
FTA	이집트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7년→2004년
FTA	알제리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6→2002(비준 단계)
FTA	레바논	Cooperation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1977년→2003년
	시리아	Cooperation Agreement	1977년
	GCC	Cooperation and Free Trade	1990년 협상시작
	인도	Cooperation Agreement	1993년
	아세안	Cooperation Agreement	1980년
	러시아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7년
	카자흐스탄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9년
	몰도바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8년
	우크라이나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8년
	알바니아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SAA)	2003년 협상시작
FTA	멕시코	Global Agreement(Association Agreement 포함)	2000년
FTA	칠레	Association Agreement(Services Agreement)	2003년(2005년)
	메르코수르	Association Agreement	FTA 협상 중
	남아프리카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2000년
	ACP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3~04년 협상 시작

주: SM은 단일시장임. 신규가입 10개국은 과거 EU와 유럽협정을 맺은 바 있음. 유럽협정을 맺은 시기는 헝가리와 폴란드(1994년), 체코와 슬로바키아(1995년), 슬로베니아(1997년), 발트3국(1998년), 몰타(1971년), 그리고 사이프러스(1973년)임.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http://europa.eu.int>), WTO, TPR(2004)에서 정리

둘째는 비호혜적(non-reciprocal) 특혜협정의 대상인데 이는 과거 식민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저개발국과의 특혜협정이다. 2003년에 발효한 78개 아프리카·카리비안·태평양(ACP)연안 국가들과의 코토누(Cotonou) 협정¹⁶⁾이 대표적인데 이 협정은 주로 저개발국의 발전과 세계시장과의 통합, WTO 규정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EU 시장에

16) 코토누협정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에 따라 체결되었던 야운데 협정(1963년)과, EU와 ACP 국가들간 체결되었던 로메(Lomé)협정(1975년)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europa.eu.int/comm/development/index_en.htm 참고.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특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비호혜적 특혜협정은 일반특혜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이다. 이 제도는 EU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EU는 가장 오래되고 폭넓은 범위의 GSP를 시행해 온 선진국이다. 기본적으로 원조보다는 무역을 통해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보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GSP는 선진국내 시장접근에서 저개발국에 혜택을 주는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홍콩 및 싱가포르와 함께 1998년 EU의 GSP를 졸업한 바 있다.

세 번째는 한·EU FTA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경우인 비유럽권 국가들과의 무역특혜협정이다. 현재 무역특혜협정을 맺은 대상은 메르코수르¹⁷⁾,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GCC(걸프협력위원회), Mediterranean(지중해권 북아프리카국가) 등인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메르코수르, 칠레 그리고 멕시코와의 무역특혜협정을 살펴 본다.

2000년 6월에 시작된 EU와 메르코수르와의 제후협정은 포괄적인 정치 및 경제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호혜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농산물 교역도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와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한 법령과 환경기준의 조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협정의 범위는 상품의 자유화를 넘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경쟁정책, 무역구제조치,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2년 이래 협상은 시장접근, 세관절차, 표준과 기술규정,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원산지 기준은 범유럽체계(pan-European system)와 유사하다. 농업, 서비스, 어업, 환경과 여행업에 대한 경제협력에 관해 이미 합의한 바 있다. EU와 메르코수르의 교역규모는 400억 불이 넘으며 서비스 교역의 규모는 126억 불에 달한다.

EU는 칠레의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2003년에 9억 불에 달하는 對칠레

17) 메르코수르 4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이다.

투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투자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제 관계를 더욱 격상시키기 위하여 2002년 11월 EU와 칠레는 2000년 4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제휴협정에 서명하였고 2003년 2월부터 협정을 발효하였다. 서비스 협정은 2005년에 발효되었다. 집행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제휴협정의 결과 칠레경제의 성장률은 추가로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1980년에서 2004년까지 칠레의 對EU 수출액은 15억 불에서 72억 불로 증가하였고 칠레의 EU로부터의 수입도 7억 불에서 31억 불로 증가하였다.

EU-칠레 제휴협정에서 포괄적 FTA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¹⁸⁾ 무역 및 무역관련 분야(4장)의 상품무역(2절)에서는 상품 자유화와 관련하여 점진적이고 호혜적인 자유화 일정이 결정되었는데, 10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모든 상품의 97.1%를 자유화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공산품은 100% 양허하였으며, 농산물은 80.9%, 수산물은 90.8%의 자유화율을 기록하였다. 비관세조치에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세관절차, 표준과 기술규정의 조화에 관한 일반적 규칙, 식물 및 식물위생, 와인과 증류주, 그리고 예외조항이 기술되어 있다. 서비스(3절)와 관련해서는 시장접근, 자연인의 이동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금융서비스는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투자, 결제 그리고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합의하였는데 별도의 절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4절)에 대해 상호 개방하고, 지식재산권(6절)을 보호하며, 경쟁당국간 협력(7절)에 합의하고 분쟁해결절차(8절)도 규정하였다.

EU는 멕시코의 두 번째 교역 대상국이며, 멕시코의 주요 투자자이다. 1990년 멕시코의 총 무역액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으나 1996년 그 비중은 6.1%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0년 EU-멕시코 FTA의 발효이후 첫 2년 동안 양자간 교역은 28.3% 증가하였으며 양자간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EU의 멕시코 수출은 146억 유로이며, EU의 수입은 68억 유로여서 EU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도 최근에 와서 크게 증가하였다. EU의 對멕시코 서비스 수출은 1995~2003년 사이에 17.2% 증가하여 32억 유로에 달했으며 멕시코의 對EU 서비스 수출은 같은 기간에 6억 유로에서 27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18) 포괄적 FTA 관련 사항이외에도 2장 정치부문협력(political dialogue)과 경제 및 산업협력, 문화협력, 과학기술협력 등을 포괄하는 3장 협력(cooperation) 등이 규정되어 있다.

EU와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도 양국간 제후협정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협정은 2000년 7월에 발효되었다.¹⁹⁾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경쟁, 지적권, 투자, 지불 등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며 EU에게는 GATT 24조하에 보고된 두 번째 협정이자 GATS 5조하에 고지된 첫 번째 협정이다. 이 협정은 관세철폐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EU는 즉시 철폐 82%를 포함하여 멕시코산 공산품에 대해 2003년까지 완전 철폐하였지만 멕시코는 EU의 공산품에 대해 200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및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협정에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할당이 있으며,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재검토 조항도 있다. 세관, 표준 및 기술규정, SPS,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협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차원의 다수의 특별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EU측은 서비스와 정부조달에 관해서 NAFTA회원국의 지위를 사실상 갖게 되었다. 서비스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현상동결(standstill) 조항을 삽입하여 새로운 차별적 조치를 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또한 남아있는 차별적 조항을 최장 10년 안에 제거하는 일정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OECD에서 양자간 맺은 조건과 EU 개별국과 맺은 투자협정에서의 조건 이상의 자유화를 약속하고 추가적인 자유화를 3년 이내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EU와 멕시코간 FTA는 멕시코가 NAFTA 회원국이기 때문에 NAFTA에서의 자유화 조건과 부합하는 수준까지의 자유화가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자유화 일정이 정해진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현재 다자무역체계에서 무역자유화가 논의될 거대경제권 3개국을 제외하고는 최혜국대우의 지위에 있는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EU가 한국과 유사한 교역규모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 노르웨이, 터키, 캐나다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와도 특혜협정을 맺고 있으며, 노르웨이와는 EEA로, 터키와는 1996년 1월부터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미루어보면 2005년 12월 DDA 각료회담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기

19) 따라서 이 경우도 정치관계, 경제 및 무역관계, 그리고 협력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은 EU의 유력한 FTA 대상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EU가 무역특혜협정을 맺은 국가들 중에서 만약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다면 세 번째 그룹인 칠레 혹은 멕시코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C-칠레 FTA나 EC-멕시코 FTA의 협상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 FTA에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에서 다루기로 한다.

3. EU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 규모

EU 25개국은 미국과 함께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전통적으로 EU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2004년 EU의 경상 GDP는 12.8조 달러로서 미국의 11.7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총 교역량은 2.5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GDP 중 민간소비지출은 59%에 달해 규모는 총 7.4조 달러를 기록하는 거대 시장이다. 한편, 역외무역 기준으로 EU는 세계 전체무역의 약 19.2%를 차지, 미국의 18.4%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의 7.6%에 대해 약 2.5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구권까지 EU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세계 총 교역규모의 약 22% 수준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세계 최대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EU 회원국들의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GDP의 약 56~67%²⁰⁾로 GDP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지출의 크기에 따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서비스,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류, 식료품 등의 비내구소비재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자동차, 가전 등의 내구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는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 2003년 기준으로 프랑스 56%, 독일 57%, 이탈리아 60%, 스페인 60%, 영국 67%이다.

나. 시장의 성장성

1) 시장통합의 심화

단일시장의 완성(1993년), 단일 통화의 도입(1999년), 그리고 신품 화폐 통용(2002년)으로 인해 EU 시장은 꾸준한 통합과 심화과정을 밟고 있다. EU는 단일유럽법(SEA)에 의해 1993년 공동시장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관통관을 포함한 물리적 장벽의 철폐, 품질 표준, 법규 및 행정관행의 통일을 통한 기술적 장벽의 철폐 그리고 재정적 장벽을 완화해 왔으며 회원국별로 이행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표(scoreboard)를 작성하면서 시장통합을 독려해 왔다. 그리하여 신품시장의 통합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 가지 장벽 철폐의 미이행율이 0.5%에 머무를 정도로 시장통합에 성과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시장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EU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통합은 한편으로는 운송비용의 절감으로, 또 한편으로는 경쟁의 격화로 물류 및 생산기지의 대형화 및 통합화를 가져왔다. 상당 분야의 산업에서 M&A 등을 통한 대형화·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특히 도소매 시장에서의 유통업체의 대형화, 국제화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기업들은 기존의 국별 물류센터에서 범유럽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해 왔으며 물류체계의 hub/spoke화를 통하여 납기를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시장통합은 또한 국별 제조업 생산지를 둘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서 생산 거점의 대형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시장통합은 종래 국영기업이 독과점 해왔던 공공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통합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소득 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차이에 의한 시장 특성의 지역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로화의 통용은 시장통합을 심화시키고 있다. 1999년 장부상의 화폐로만 유로화가 도입될 당시에는 유로지역내 기업 중 유로화를 가격표시에 사용하거나 대금청구에 사용하는 기업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2년 1월 유로화가 공식적인 유일한 법화로 등장하게 되면서 유로화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 결과 유로권은 물론 비유로권 유럽국가들조

차, 종래 국별 통화 결제시 발생하던 환차손이 없어짐에 따라 거래비용의 절감, 가격의 투명성 제고에 따르는 경쟁격화 등 시장 통합의 이점이 증가되었다. EU 확대이후 아직 비유로권인 신규가입국과 EU의 주변국인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칸국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로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시장통합의 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²¹⁾

2) EU의 확대 및 범유럽경제권 형성에 따른 시장확대

EU는 1990년대 이래 유럽협정(Europe Agreement)에 따라 그동안 중·동구 및 터키 등의 국가들과 준회원국 협정을 맺어 왔으며,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4년 5월을 기점으로 EU는 중·동구 및 남구 10개국을 신규 회원으로 맞이함에 따라 25개 회원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확대로 말미암아 EU의 단일경제권은 중부유럽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EU확대로 EU는 4억 5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총 25개 회원국으로 12조 달러를 넘는 거대 단일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EU 확대는 중·동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7년경이면 발칸의 일부 국가 및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EU의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중해 연안국 및 북아프리카국가들과 특별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2010년경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동구,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유럽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 서비스 시장의 통합

EU는 실물부문과 화폐부문에서 상당한 시장통합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에서 EU 시장의 통합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집행위원회가 2000년 7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단일경제라고 하지만 EU의 시민과 서비스 공급자들은 회원국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²⁾ 서비

21) EU회원국 중 유로화 未도입국과 EFTA, 동구, 지중해 연안국가, 유로권 아프리카들은 총교역의 50% 이상이 유로권과의 교역이다.

스시장의 통합 없이는 EU를 2010년까지 가장 경쟁력있는 경제로 만들려고 하는 리스본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EU역내 서비스시장이 자유화되면 60만 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430억 불의 GDP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EU는 2004년 3월 Bolkestein Directive를 통해서 서비스분야 단일시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규제를 제거하고 자유로운 영업허가와 서비스이동의 자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EU가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할 때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항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olkestein Directive에서는 서비스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접촉창구의 단일화 체제를 도입하고 행정절차의 전산화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절차를 단순화시킬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현재의 법적 규제가 서비스 지침상의 조건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관련해 서비스공급자는 영업이 최초로 허가된 회원국의 법령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으면 되는 출신국 원칙(country of origin principle)이 적용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서 예를 들어 중·동구 신규회원국에서 온 서비스 공급자는 출신국에 의해 서비스 공급을 규정받을 뿐 서비스 수요국의 경쟁자와 동일한 조건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²³⁾ 이 조항은 2005년 3월 EU정상회담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은 이 원칙에서 배제하는 등 서비스수요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절충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현재 서비스 시장의 통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보통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간 이동의 자유화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이다. 보통 상업적 서비스는 적용대상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보건·사회보장 등 복지서비스, 교육·문화 서비스, 시청각서비스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으며, 금융 서비스, 전자통신, 운송 등 공동체 차원에서 별도로 규정되는 분야가 적용 배제되며, 노동권·집단합의제·사회 안정 관련 법령, 공공업무 집행, 공익목적

22) The State of the Internal Market for Services, 2002. 07.

23) 유럽사회모형을 주창하는 기존 EU회원국들은 이 조항에 의거한 서비스 공급이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에 해당한다고 격렬히 반발하였다.

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공급의 안정성, 일반적 접근성, 연속성, 영토적·사회적 결속, 교육 및 문화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둘째는 상호인정과 서비스수요국 원칙(principle of country of destination)이 적용되는 분야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출신국 원칙은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사실상 EC조약 50조의 동등대우의 원칙(equal treatment principle)²⁴⁾에 어긋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동등성의 원칙을 포함하는 상호인정의 원칙으로 치환시켜서 서비스수요국 원칙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항이라든가 서비스 당국자간의 긴밀한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U내의 이러한 서비스통합 동향은 EU 서비스시장의 통합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외에도 FTA에서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분야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서비스수요국 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물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와 서비스산업에 큰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의 큰 틀 안에서 속도의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24)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relating to the right of establishment, the person providing a service may, in order to do so, temporarily pursue the activity in the State where the service is provid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re imposed by that State on its own nationals."(EC조약 50조)

4.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한국과 EU간 FTA는 양국간 진행되고 있는 공동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FTA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 무역에 관한 규정(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및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하며 공동위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양국간 협력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EU가 멕시코, 칠레, 메르코수르와의 제후협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형태이다. 아울러 양국간 FTA는 GATT 24조와 GATS 5조²⁵⁾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공산품 양허 방식

상품 무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범위와 양허계획이다. 공산품에 대한 기존의 FTA에서의 관세철폐계획을 보면 EU는 공산품의 경우 양허율 100%에 압도적 다수의 즉시 철폐를 포함한 점진적인 관세 철폐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왔다. 양자간 통상현안에서 공산품의 경우 관세와 관련해서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없다. 다만 우리의 관세율이 공산품의 경우에도 5 ~ 10% 사이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의 철폐계획이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EU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양허계획과 관세 철폐 계획은 EU-멕시코 FTA에서 멕시코의 양허계획과 같이 비대칭적인 관세율 철폐가 예상된다. 여기서 공산품(HS25~97)의 경우 네거티브 시스템에 의한 자유화 유보 품목을 명시해야 하는데, 우리 측의 경우 섬유, 목재, 유기·무기 화약품, 일부 기계류, 차량 부품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유보 품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25) 상품(GATT) 및 서비스(GATS)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WTO 회원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하여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의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국민 대우나 현상동결 조항 등이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언급될 필요가 있다.

한편 EU-멕시코 FTA의 경우 멕시코가 NAFTA의 일원으로서 미국과의 관세철폐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철폐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설정된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이 점은 한국이 만약 미국 및 EU와 비슷한 시기에 FTA 협상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이와 함께 최혜국대우는 일반적으로 상품 무역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가적인 FTA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양허율 비교

(단위: %)

구 분		전체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
한-칠레	한국	양허율:99.8 즉시철폐:87.2	양허율:100 즉시철폐:99.9	양허율:100 즉시철폐:58.2	양허율:100 즉시철폐:69.5	양허율:98.5 즉시철폐:15.6
	칠레	양허율:99.0 즉시철폐:41.8	양허율:99.8 즉시철폐:30.6	양허율:100 즉시철폐:100	양허율:100 즉시철폐:99.0	양허율:94.2 즉시철폐:92.9
한-싱	한국	양허율:91.6 즉시철폐:59.7	양허율:97.4 즉시철폐:68.8	양허율:82.9 즉시철폐:53.7	양허율:56.2 즉시철폐:13.8	양허율:66.6 즉시철폐:16.0
	싱가포르	양허율: 100, 즉시철폐 :100				
한-EFTA	한국	양허율:99.1 즉시철폐:86.3	양허율:100 즉시철폐:92.3	양허율:100 즉시철폐:45.5	양허율:88.4 즉시철폐:27.1	양허율:84.2 즉시철폐:15.8
	EFTA	양허율:100	양허율:100, 즉시철폐:100			양허율:100 즉시철폐:35~55

자료: 외교통상부(2005)

다. 농산물

농산물의 경우 양자 협상의 기본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DDA 협상에서 EU와 우리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EU는 칸쿤 협상 이전에는 DDA 협상에서 일본, 스위스, 한국과 같은 그룹인 NTC 그룹에 속해 있었으나 칸쿤 협상에서 EU는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미국·EU의 공동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EU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농업환경에 속해 있으나 관세상한 및 관세할당과 관련하여 EU는 우리보다 더 낮은 관세

상한선과 관세할당의 증량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의 조기 철폐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국내보조금의 경우 블루박스를 넘어서 직접 지불제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EU의 이러한 입장은 EU가 그동안 유지해 온 공동농업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U는 1962년 공동농업정책을 수립하면서 농산물 가격지지와 가변부과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국경보호조치를 핵심 축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농업보호를 통해서 생산된 과잉생산물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통해서 해외가격과 동일한 낮은 수출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결국 농산물 자급체계의 빠른 정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요와 유리된 농산물 과잉생산을 가져와 1980년대 이후 유제품과 곡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잉생산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1986년의 경우 전체 EU예산의 64%가 공동농업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될 정도로 과잉생산의 문제는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U는 농산물 생산 중단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Blue Box)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는 과거의 가격지정정책을 개혁한 것이지만 휴경을 전제조건으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생산량과 보조금 규모가 여전히 연계되어 있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2003년의 개혁에서는 지불제도를 변경하여 농업소득직접지불제도(Single Farm Income Payment)를 도입하여 생산량과 보조금의 규모를 분리하는 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즉,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은 가격지지에서 블루박스로 그리고 다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EU는 관세에 의한 보호의 수준을 과거에 비해 낮춰 왔으며 이에 따라 낮은 수준의 관세 상한이나 관세할당의 증량에 대해 우리보다 더 유연한 입장에 있으며, 여전히 수출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조의 금지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해 온 것이다.

EU와의 농산물 협상은 EFTA나 싱가포르보다는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세상한 및 관세할당과 관련된 시장접근분야의 경우에 고추, 마늘, 양파 등 개별 품목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해 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품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DDA에서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핵심은 한·EU FTA에서 EU가 수출보조금의 조기 철폐 가능성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EFTA FTA에서는 상대방이 수출보조를 할 경우 양허품목에 대해 다시 MFN 실행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한 바 있는데²⁶⁾, 이를 준용하여 협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공 농산물 및 수산물의 경우 한-EFTA FTA에서와 같이 자유화 대상 품목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체계로 가야 할 것이다. 한-EFTA FTA의 경우 농산물과 수산물에서 우리의 양허율은 80%대에 머물러 있었으며, 즉시 철폐의 비율도 10 ~ 20%대로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개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양허대상 품목의 경우라도 가공농산물을 중심으로 점진적 철폐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어의 경우 영국 및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양자간 협의회를 설치하여 EU의 농촌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를 제안할 수도 있다.

라.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조치는 우리 측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반덤핑의 피소국 중의 하나인 한국으로서는 양자간 FTA를 통해서 반덤핑 조사의 개시나 제소이전에 당사국끼리 서면 통보 및 사전 협의를 하는 공식적 절차를 만들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낮은 관세적용’의 원칙²⁷⁾이나 제로잉 금지를 준수하기로 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반덤핑 발동가능성의 유지 필요성을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년 단위로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 하지만 EU측은 반덤핑을 무역구제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해 오고 있는 바, 이러한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6) 한-EFTA FTA 별도협정문 농업분야 제8조

27)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이다.

WTO 수준의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U-멕시코 FTA의 경우도 WTO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우리 측 무역위원회와 EU측 무역구제기관간 협의회가 2003년에 발족되어 작년까지 매년 개최되어 왔는데 그간 이 협의회에서 양측은 무역구제제도, 시장경제지위, EU 확대에 인한 영향,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등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EU-중국간 섬유 교역에 대한 합의, DDA 규범협상 및 시장경제지위 등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 관심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WTO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개시이전에 양국이 긴밀한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양자간 FTA 협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FTA로 인한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일시적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조치를 취할 당시 당해 상품의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에 적용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낮은 수준까지 관세율을 다시 인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 원산지규정

원산지 규정의 경우 EU와 한국은 공통적으로 특혜 및 비특혜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최혜국대우의 적용, 정부조달, 무역구제(trade defense) 등 통상정책 수단과, 수입검사 및 수출환급, 그리고 무역통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한편, 특혜원산지규정은 GSP 등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EU의 경우 공동대외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EU 원산지 상품사이에 구별하는데 주로 의미가 있다.²⁸⁾ EU는 공동통상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무역협정이다.²⁹⁾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고

28) 유럽사법재판소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특혜원산지규정이 개도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있어 개별 회원국의 재량이 상당히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비특혜원산지규정의 범위가 넓어서 섬유/의복, 신발, 전자제품, 차량, 고기와 와인을 포함한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원산지규정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세번변경(Change of Tariff Headings: CTH)기준³⁰⁾, 부가가치(VA)기준³¹⁾, 그리고 특정가공공정(SP)기준이 있는데³²⁾, 통상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내 부가가치는 40 ~ 75%이상이 되어야 역내물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은 다른 두 기준에 비해 비원산지의 가공비율 산정에서 관대한 성향을 보인다. EU는 원산지 비율의 도출이 쉽다는 이유로 보통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산정에서 공장도가격(ex-work)을 기준가격으로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내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섬유제품의 경우 원산지이외에서의 부가가치가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로 규정된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60% 이상의 원산지 부가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는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결정가격으로 공장도가격을 일반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 원산지결정가격을 FOB가격으로 삼은 것과 대비된다. 공장도 가격을 원산지 결정가격으로 삼는 경우 운임 및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아 원산지 규정이 더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동일하게 공장도가격을 사용하고 있는 EFTA와 EU가 다른 점은 최대 허용조항(de minimis rule)³³⁾이 EFTA의 경우 10%이지만 EU는 5%만을 허용하고 있어 EFTA보다 EU가 더 엄격한 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U의 특혜원산지규정에서 고려할 사항 중의 하나는 수출국의 물품에서

29) 메르코수르도 공동시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공동통상정책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30) 최종생산과정을 거친 완제품의 세번이 그 완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세번과 달라졌을 때, 세번 변경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31) 완제품의 부가가치 중 일정비율 이상이 창출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32) 제조 공정 중 특정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 가지 기준들이 완전히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EU는 일반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가공 비중을 요구하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공산품의 경우 EU는 수입업자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과 단순한 부가가치기준사이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원산지 성분의 허용비율을 말하는데, 미소기준이라고도 한다. 보통 10%가 일반적이다.

특혜대상국가의 성분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누적(cumulation)조항이다. EU의 누적체계에는 EU-멕시코 FTA와 같은 양자간 누적 체계도 있고 범유럽누적체계(pan-European system of cumulation)와 같이 특혜협정에 있는 국가들의 제품을 수출국의 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와 EE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생산된 어떤 물품도 동일한 원산지로 보는 완전 누적체계도 있다. EU-멕시코 FTA가 양자간 누적체계를 적용한 것은 EU가 NAFTA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누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EU는 만약 한국이 동북아에서 구체적인 RTA의 실현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EU는 양자간 누적체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섬유·의복 분야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로 추정된다. 따라서 EU측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품목에 들어가면 섬유·의복 분야의 경우 원산지 규정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섬유·의복 분야는 원사-직물-의복으로 가공공정이 높아짐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면 비회원국의 원재료가 별다른 제재없이 들어 와서 FTA 상대국의 산업기반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섬유·의복 분야의 원산지 규정은 많은 경우 특정가공공정(SP)기준을 따르는데, EU-Mexico FTA의 경우도 이러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는 EU국가 중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같이 섬유·의복 분야가 민감산업인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EU와의 FTA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허용조항 또는 미소기준에 대한 분명하고도 완화된 기준을 확립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원산지 규정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의 인정여부이다. 일반적인 원칙은 영업원칙과 관련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입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합작 사업에 의한 상품이 한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의 누적 조항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EU와의 협상에서도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인정을 받더라도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 대한 역외가공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은 역외가공이라는 일종의 예외조항을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³⁴⁾

한편, EU는 관세환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³⁵⁾ 이는 통상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우리의 관세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관세환급 금지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측의 관세환급제도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품 가격의 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무역업자들은 원산지 증명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경우 원산지 증명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행정비용의 간소화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는 양국간 통상현안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양국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일단은 WTO상의 TBT 협정과 SPS 협정을 따르기로 하면서 향후 일정기한 내,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하여 SPS는 한국과 EU간 통상 현안으로 자주 제기되어 왔던 분야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EU로서는 SPS와 관련하여 이 조항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위생 기준의 통일과 조화, 검사기관 상호인증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EU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신중하게 수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른 우리의 현안사안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세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

34)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개성공단 물품을 포함하여 경제특구의 물품 4,625개에 대하여 역외가공을 허용받은 반면, 한-EFTA FTA의 경우 267개 품목에 대해서만 역외가공을 허용받았다.

35) EU는 지중해권 북아프리카 국가들 또는 남아공과의 협력협정 또는 제후협정에서 관세환급에 대한 명문화된 허용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캐나다-칠레 FTA, 캐나다-이스라엘 FTA, 미국-이스라엘 FTA, 멕시코-칠레 FTA 등에서는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보이스(invoice) 신고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 통관절차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 통관체계가 나아갈 방향과 EU의 통관체계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미리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 서비스 무역

보통 금융서비스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은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및 정부조달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일단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양측은 GATS를 기본으로 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추가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에 대한 내부 양허표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³⁶⁾

서비스 개방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변경과 관련되므로 실질적으로 최혜국 대우는 인정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양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3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당사국에게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럽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청각서비스나 도로운송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항공운송서비스 등 EU 국가들이 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시행중인 각종 협력 조치의 경우 MFN 면제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GATS 5조의 규정에 따라 FTA에서 MFN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우리 측이 다른 FTA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함으로써 공동제작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의 EU진출과 관련하여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청각 서비스의 국적문제이다. 시청각서비스의 공동제작에서 자금 및 인력 지원의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청각서비스의 국적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36) 한-EFTA FTA의 경우 DDA 2차 양허안에 추가하여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전기용품), 빌딩 청소업(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경영 관련 컨설팅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

시청각서비스의 진출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과세문제이다. EU 역내시장에서 부가가치세와 물품세의 경우 비록 공동체 차원에서 최저세율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EU회원국 간에 단일한 조세체계가 운용되고 있지 않다.³⁷⁾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의 경우 국가에 따라 25%(덴마크와 스웨덴)에서 15%(룩셈부르크)로 다양하며 덴마크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을 고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단계인데 판매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체제(origin-based system)로 통일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수렴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및 방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소비되는 장소에서 과세되는 원칙이 도입되어 2003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반대로 해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이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면 방송서비스의 원활한 교류와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면 다시 환급되어야 한다. 가스와 전기사업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2005년 1월부터 이러한 에너지의 소비되는 장소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는 GATS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서비스 무역에서 시장접근이란 서비스 서비스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Mode 3 및 4와 관련되어 중요성이 더해진다. 서비스 양허표의 작성은 개방 분야들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 또는 GATS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GATS 양허안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ode 4의 양허 수준은 국내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입장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규제³⁸⁾, 독점 및 배타

37) EU는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이 15%보다 낮지 않고, 할인세율이 5%보다 낮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할인세율은 보통 레스토랑, 하우징, 전기·가스 공급 등에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경우는 책, 의약품, 식료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할인 및 면세의 적용대상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8) 국내시장에서의 각종 규제가 무역을 저해할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서비스시장의 경우 생산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긴밀한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 GATS 6조는 이러한 경우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회계기준이 외부 회계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적 서비스, 영업 관행³⁹⁾, 국제수지 보호⁴⁰⁾, 일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 투명성⁴¹⁾ 등은 GATS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금융서비스에서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의 경우 최혜국대우, 시장 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양국간 통상 현안이 되고 있는 은행임원 국적제한을 위한 입법추진이 미국 등 해외 사례의 경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은행임원 국적제한 및 거주요건의 GATS 16조(시장접근제한금지)⁴²⁾와 GATS 17조(내외국인 차별금지)⁴³⁾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EU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보조항을 만들면서 의료·교육 분야에서의 일부 개방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 경쟁 및 정부조달

경쟁정책은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국제적 카르텔의 형성,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분야이다. EU는 특히 WTO 다자간 협상에서 경쟁규범을 선도적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높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우선 상대국에 영향을 주는 집행활동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보의 시기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둘째, 경쟁당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39) 어떠한 국내적 영업 관행(business practices)이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서비스무역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GATS 9조는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은 요청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고 우호적으로 조사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40) 일반적으로 어느 서비스 부문의 개방으로 급격한 자본의 유출이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제수지 상의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국제수지의 보호(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를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다른 제한과 조건을 따라야 한다(GATS 제12조 1항 및 3항).

41) 모든 회원국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위한 문의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된 국내법령이 바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WTO에 보고해야 한다(GATS 제3조 1항·2항 및 제3조의 2).

42) WTO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양허표상 합의된 조건하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43) WTO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 나라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44) EU의 입장은 그동안 WTO 무역과 경쟁작업면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양자간 경쟁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EU 양자협정(1991, 1998)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 경쟁당국간 협력은 인적교류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양국은 국내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기업 활동’의 축소에 노력하고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경쟁당국은 협의를 개시하고 요청받은 국가는 그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를 분명히하는 차원에서 해당 경쟁제한 행위가 일방국 기업이 상대국 영토에서 수출, 투자, 또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양국 국내시장 및 수입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할권의 조율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문의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와 다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스크린쿼터가 한·EU FTA의 경쟁분야에서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양국이 모두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양국이 시청각서비스의 공동제작을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에서 공동제작물의 상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를 기본으로 정보공개 및 접촉선 확보, 투명성 증대가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조달에 관한 WTO협정(GPA)’에 의하여 규율하면 될 것이다.

자. 지식재산권

EU의 주요관심사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협정(TRIPS)”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TRIPS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국이 자국 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을 EU가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TRIPS협정이 지재권, 그중에서도 특히 EU의 관심분야인 지리적 표시에 대해 충분히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보통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EU내에서 해당 지재권

보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리적 표시와 같은 지재권의 경우 보호 대상의 정의와 보호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EU 경제 내에서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분야의 인적교류, 교육훈련의 증진 등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TRIPS 규정상 특허예외를 추가할 수 있다.⁴⁵⁾ 또한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와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EU는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입법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EU가 확보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신청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 측에서는 FTA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재권 보호의 확대가 EU의 기본 입장이라면 이 분야에서의 개선 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재권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할 분야도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과 TRIPS협정과의 조화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서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가 TRIPS이사회에 제출한 EC 제안서 2002에 따르면 EU는 미국 등 전반적으로 선진국 의견에 동의하나 보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TRIPS협정과 CBD협약간의 대립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양 협정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⁴⁶⁾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공동의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차. 투자

45) 예를 들어 한-EFTA FTA에서와 같이 1)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진 그러한 방법, 2) 식물 또는 동물 변동,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조법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46) TRIPS이사회 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절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TRIPS이사회 내에서의 논의는 별로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CBD,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ganisation: WIPO)등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속적인 협정의 체결, 그리고 이러한 계약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와 같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윤미경(2002) 참고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내국민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최혜국대우)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단, 제3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당사국의 사회정책 또는 경제개발정책에 기초한 보조금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내국민대우로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가 자본이동에 심각한 위험이 될 때 안전장치로서 투자유치국은 자본이동에 대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국민대우의 유보조항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속서 등에 유보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상 목적 및 인센티브 검토, 국가안보, 공익 및 공공질서 유지,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현황 파악, 금융안정, 문화 다양성 및 정체성 보호를 위해 일부 산업에 대한 당사국의 투자를 유보할 수 있다.⁴⁷⁾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단 투자자와 당사국간 분쟁의 경우 해결절차를 국제분쟁 중재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서비스에서 국제중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협정 금융서비스 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대정부 소송과 관련해서는 유보조항을 달아야 할 것이다.

47) 한-EFTA FTA의 경우 농림축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경우 벼·보리 재배업과 육우사육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 사용사업 및 제3장 서비스무역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항공산업분야, 방위산업과 발전, 송전 및 배전 판매사업,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지분 참여, 신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또는 자본거래,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사업, 수산업, 가스 산업, 원자력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세원. 2004. 『EU경제학 - 유럽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 김홍중. 2003. 「제2차 한·EU 공동위원회의 주요 내용과 성과」 『KIEP 세계경제』. 2003. 9.
- _____. 2005a. 「한국의 對유럽 FTA, 주요 현안과 평가」 한국의 FTA정책 워크숍, 외교안보연구원. 2005. 3.
- _____. 2005b.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2005. 11.
- 김홍중·이종화. 2004. 「한·EU FTA」 강문성 외.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와 정책과제』. 정책연구 04-11, KIEP.
- 김홍중·이창수·김군태·강준구·박순찬. 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KIEP 정책연구 05-09.
- 김홍중·이철원·박영곤·박경석. 2003.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KIEP 지역연구 03-02.
- 산업자원부. [Online]. Available: <http://www.mocie.go.kr/>
- 송유철·박지연·임송수·이재옥·서진교·김상현. 20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대응방향』. 정책연구 03-1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4. 『외국의 통상환경(2004년)』. 2004. 12.
- _____. 2005. 「제4차 한·EU 공동위원회」 참고자료, 2005. 6.
- _____. 2005. 『주한EU상공회의소 2005년도 통상보고서 검토』. 2005. 9.
- KOTIS. [Online]. Available: <http://kita.net/>
- 한국무역협회. 2005. 『EU 경제동향 및 최근 한·EU 통상현안』. 국제사업본부, 2005. 5.
-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Decision No 2/2000 OF the EC-Mexico Joint Council of 23 March 200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nline]. Available: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mexico/doc/a4_dec_02-2000_en.pdf

EUCCK. 2004.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 2004*. Seoul, Korea. March.

European Commission. [Online]. Available: <http://europa.eu.int/>

_____. 2002.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Chile, of the other part. [Online]. Available: http://europa.eu.int/comm/trade/issues/bilateral/countries/chile/euchlagr_en.htm

Eurostat. [Online]. Available: <http://europa.eu.int/comm/eurostat/>

Hardin, A. and L. Holmes. 1997. *Services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ff Research Paper. Industry Commission.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s.

Hertel, T.W., K. Anderson, J. Francois and W. Martin (2002),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al Liberalization in the Millennium Round", GTAP Working Paper, No. 08.

Hoekman, B. 1995. "Assess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in: Martin, W. and L.A. Winters(eds.).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Economies*. World Bank Discussion Paper No. 307.

Hoekman, B. and J.F. Francois. (1999), "Market Access in the Service Sectors". manuscript, Tinbergen Institute.

Kalirajan, K., G. McGuire, D. Nguyen-Hong and M. Shuele. 2001. "Restrictiveness of International Trade in Banking Services," in *Impediments to Trade in Services: Measur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C. Findlay and T. Warren, ed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Kim, H. and C. Lee. 2004. "Korea-EU Trade Relations: Over-traded or Under-traded?",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2),

137–148.

Lamy, P. 2002. Stepping Stones or Stumbling Blocks? The EC's Approach towards the Problem of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Trade Policy. *The World Economy*, 25(10), pp. 1399–1413.

Lee, J.W. 1995. "Capital Goods Import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8, 91–110.

Lejour, A.M., R.A. de Moolj and R. Nahuis. 2001. "EU enlargement: Economic implications for countries and industries", CPU Document No. 011, Hague.

OECD.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Rules of Origin." TD/TC/WP(2002)33/FINAL, 19–Jul–2002, Trade Committee, OECD, Paris.

Sachs, J.D. and A. Warner. 1995. "Economic Reform and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1–118

Trewin, R. and T. Warren. (2001), "A Price–Impact Measure of Impediments to Trade in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Findlay, C. and T. Warren (eds.), *Impediments to Trade in Services: Measur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World Bank.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WTO. 2005. PC Integrated DB Tariffs & Imports. CD–ROM. (June).

_____. 2004. *Trade Policy Review – European Communities, reported by the Secretariat*, WT/TPR/S/136, June 2004.

_____. 2004. *Trade Policy Review – Republic of Korea, reported by the Secretariat*, WT/TPR/S/137, August 2004.

_____. [Online]. Available: <http://www.wto.org/>